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54,470,915	31,634,127
일반회계	1,022,063,343	30,661,900
특별회계	32,407,572	972,227
기타특별회계	32,407,572	972,22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3,692	10,91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406,178	282,1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143,588	274,308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114,666	303,440
수질개선 특별회계	54,514	1,635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0,247	60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186,856	35,60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88,807	8,664
주차장 특별회계	1,829,024	54,871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946,432천원(일반 4,000,000, 재해 · 재난목적 9,946,432)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